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제1절 원산지 규정

제3.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식이란 정기적인 방류, 급식, 또는 천적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연체동물·갑각류·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및 수생식물을 포함한 수생생물을 알·치어·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권한 있는 기관이란 수출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정된 모든 기관을 말한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란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까지의 보험비용 및 운임을 포함한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말한다. 평가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본선인도가격이란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을 말한다. 평가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체가능재료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단순히 시각적인 검사만으로는 구별하기 불가능한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인정된 회계기준 또는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말한다. 그러한 기준은 세부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 해석 규칙, 부의 주, 그리고 류의 주를 말한다.

재료란 다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다른 상품의 생산의 대상이 되는 원료, 부품, 구성요소, 하위조립품 및/또는 상품을 말한다.

중립재란 다른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나 그 다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아니하는 상품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하며, 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를 포함한다.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란 소매를 위하여 사용된 용기 또는 포장재료 외에 그 운송 중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상품을 말한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사육, 채굴, 수확, 어로, 양식, 영농, 덧사냥, 수렵, 포획, 채집, 수집, 번식, 추출, 제조 또는 조립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을 말한다.

제3.2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제3.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 나.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또는
- 다. 상품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에 합치되는 경우

그리고 그 상품이 이 장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제3.3조 특정 상품의 취급

1.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 영역 밖의 지역¹(이하 “역외가공지역”이라 한다)에서, 부속서 3-나에 열거되고 한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에 작업 또는 가공을 수행하고, 이후에 다른 쪽 당사국으로의 수출을 위하여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상품은 다음을 조건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원산지 지위를 신청하는 최종 상품의 본선 인도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 나. 해당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을 가공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치의 60퍼센트 이상이 될 것

2.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산하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한다.

- 가. 이 조의 제1항의 이행점검

¹ 이 항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상품이 가공되는 지역이 이 협정이 서명되기 전에 한반도에 위치하고 한반도에서 운영되는 기존의 산업단지 지역으로 한정된다는 것에 합의한다.

- 나. 공동위원회에 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활동 보고 및 필요시 공동위원회에 권고사항 제공
- 다. 기존 역외가공지역의 확대와 추가 역외가공지역² 검토 및 지정, 그리고
- 라. 공동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그 밖의 사안에 대한 논의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관련 조들은 이 조의 제1항이 적용되는 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3.4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2조가호의 목적상, 다음 상품은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나. 위의 가호에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다. 당사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 라. 그 당사국의 영토,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수렵, 낚시,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마. 그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 바.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취득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이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한정한다.
- 사. 당사국에 등록되거나登記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수산물
- 아. 당사국에 등록되거나登記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위의 사호에 언급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생산되거나 가공된 상품
- 자. 당사국에서 이루어진 제조 또는 가공공정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하거나 다른 상품의 생산에 원료로서 활용되기 위한 것, 또는 당사국에서 소비되고 수집된 중고품으로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 그리고

² 이 호의 목적상, 역외가공지역은 한반도에 있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은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역외가공지역과 기존의 역외가공지역의 확대에 대한 관련 규칙과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고 합의한다.

- 차. 당사국에서 위의 가호부터 자호까지의 규정에 언급된 상품으로부터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5조 역내가치포함비율

1.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목적상,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text{역내가치포함비율} = \frac{\text{본선인도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text{본선인도가격}} \times 100$$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그리고 비원산지재료가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2. 비원산지재료가치는 다음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 가. 수입된 비원산지재료의 경우, 비원산지재료가치는 수입시 재료의 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다. 그리고
- 나. 당사국에서 획득된 비원산지재료의 경우, 비원산지재료가치는 그 당사국에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 가능한 지불된 가격 또는 지불하여야 하는 가격이다. 그러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그리고 공급자의 창고에서 생산자의 장소로 재료를 운송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어떠한 비용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당사국에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제품이 그 당사국에서 다른 제품을 제조하는데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다른 제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때 그 재료의 비원산지 요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3.6조 누적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그렇게 결합된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에서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된다.

제3.7조 최소 공정 또는 가공

1. 상품이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와 관계없이, 상품의 본질적 특성에 최소한으로 기여하는 다음의 공정 또는 가공은 그 자체만으로 또는 조합하여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가. 운송 및 보관 중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 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다.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 라. 세척·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마.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 바.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사.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아.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 자.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 차.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카.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 포함), 쪼개기,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
- 타.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 파.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하.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당류의 혼합
- 거. 시험 또는 측정
- 너.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
- 더.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
- 러. 동물의 도살, 또는
- 머. 가호부터 러호까지 규정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2. 해당 상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제1항의 의미 내에서 최소 공정 또는 가공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수행된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3. 양 당사국은 그 밖의 공정을 최소 공정 또는 가공으로 합의할 수 있다.

제3.8조 최소허용수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 가.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 그리고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비원산지재료가 이 호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 규정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총중량이 그 상품의 총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제3.9조 대체가능재료

1.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인지를 결정할 때, 모든 대체가능한 재료는 다음에 의하여 구별한다.

- 가. 각 대체가능 재료의 물리적 분리, 또는
-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모든 재고관리기법의 사용

2. 특정 대체가능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은 회계연도 동안 그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제3.10조 중립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중립재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 가. 연료, 에너지, 촉매제 및 용제
- 나.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 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 라. 공구, 금형 및 주형
- 마.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 바.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그리고
-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3.11조 세트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일반해석규칙의 규칙3에 정의된 세트는 세트의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제3.5조에 따라 결정되는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본선인도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3.12조 포장재료 및 용기

1. 상품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용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3.13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1. 수입 시에 상품과 함께 인도되고 제공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을 조건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 가.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같이 분류되고,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나.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일 것

2.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1항에 기술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에 있어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3.14조 직접운송

1. 특혜관세대우를 주장하는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된다.

2.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에서 경유하여 운송되는 상품은 그러한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 보관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을 조건으로,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통과를 위한 상품의 반입은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나. 그 상품이 그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의 분리, 그리고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 외에 비당사국에서 그 밖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상품이 이 항에 규정된 대로 비당사국에서 일시 보관되는 경우, 그 상품은 보관되는 동안 그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비당사국에서 상품이 보관되는 기간은 상품의 반입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당사국에 상품이 보관되는 기간은 상품의 반입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이 조 제2항의 목적상, 다음의 서류가 상품의 수입 신고 시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가. 통과 또는 환적의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서류, 그리고

나. 보관 또는 컨테이너를 적출하는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서류, 그리고 비당사국 관세당국이 제공하는 증빙서류. 수입국 관세당국은 그러한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러한 비당사국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에 대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제2절

원산지 이행 절차

제3.15조 원산지 증명서

1. 부속서 3-다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상품이 이 장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 국내법률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다.
2. 원산지 증명서는
 - 가. 고유한 증명번호를 포함한다.
 - 나. 이 장의 목적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근거를 기술한다.
 - 다. 서명 및 인장과 같은 보안상 특징을 포함하며, 인장은 수출 당사국이 수입 당사국에 통보한 것과 합치한다.
 - 라. 영어로 작성된다. 그리고
 - 마. 인쇄본이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힌 원산지 증명서로 양해된다.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은 단 1부만 인쇄되어야 한다.
3. 원산지 증명서는 해당 상품의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된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하다.
4. 원산지 증명서가 불가항력,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하되, 선적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발급될 수 있다.
5. 원산지 증명서의 도난, 분실 또는 사고로 인한 멸실의 경우, 수출자나 생산자는 이전에 발급된 원본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함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하여, 진정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진정등본은 “~일에 발급된 ~번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진정등본”이라는 문구를 포함한다.

제3.16조 권한 있는 기관

1.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권한 있는 각 기관의 명칭과 관련 연락처를 통보하고, 권한 있는 각 기관이 사용하는 관련 양식 및 문서에 대한 모든 인장 견본의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2. 위에서 제공된 정보에 어떤 변경이 있을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신속하게 통보되며 그러한 변경은 통보일부터 7근무일 후 또는 그러한 통보에 적시된 더 늦은 날 발효된다.

제3.17조 특혜관세대우의 청구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청구하는 수입자는
 -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적시하는 서면 진술서를 세관 신고 시 작성한다.
 - 나. 가호에 언급된 수입세관 신고 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한다. 그리고
 - 다. 각각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원본 원산지 증명서 및 상품의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³
2. 수입자가 신고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수입자는 신속하게 신고서를 정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한다.

제3.18조 수입 이후 특혜관세대우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이 수입된 경우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시하면, 그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상품이 수입 시에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입증하는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 나. 수입 당사국이 요청할 수 있는, 상품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문서
2.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신청에 대한 사전조건으로서 수입 시 관세당국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9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1. 이 장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하는 목적상, 당사국은 과세가격이 미화 700 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요건을 면제한다.

³ 원산지 증명서상의 모든 정보가 제3.27조(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통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 간에 교환되는 경우,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입자에 대하여 수입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수입자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 각주는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어떠한 요건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면제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그 수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지 아니하다.

제3.20조 기록유지요건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가 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발급된 날부터 3년간 원산지 관련 문서를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문서는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 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중립재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 다. 수출되었던 형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 라.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이 요구하는 그 밖의 그러한 서류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수입자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과 상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그 밖의 모든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4.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자국의 법률에 따라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매체를 이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제3.21조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

제3.23조를 저해함이 없이, 판독불가, 표면상 결함 및 원산지 증명서와 세관 서면 신고서 간 불일치와 같은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수입자는 정정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관세당국의 요청일부부터 5근무일 이상, 30근무일 이하의 기간을 부여받는다.

제3.22조 비당사국 송장

수입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송장이 비당사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3.23조 원산지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차례대로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가. 수입자로부터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의 요청
- 나.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대하여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
- 다.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방문검증 요청, 또는
- 라.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그러한 절차

2. 제1항나호의 목적상,

- 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공한다.
 - 1) 그러한 검증을 요청하는 이유
 - 2) 해당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그 사본, 그리고
 - 3) 그러한 요청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정보 또는 서류
- 나.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가능한 한도 내에서 사실 및 조사결과를 포함한 검증 결과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한다. 그리고
-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상품의 원산지 여부에 대한 판정의 결과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한다.

3. 제1항다호의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제공한 검증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의 동의 하에,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검증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의 동행 하에 수행할 수 있다.

- 가. 방문검증을 수행하기 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방문검증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전에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그러한 방문검증을 수행하겠다는 의도의 서면요청을 전달한다.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요청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답변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방문검증 요청에 동의하나, 제안된 방문검증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방문검증에 대한 승인과 함께 이를 통보받는다. 그러한 연기는 제안된 방문검증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다.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그러한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세관직원의 동행 하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방문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라. 방문검증을 개시하기 전에, 검증과 관련된 사안은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 간에 상호 논의된다. 방문검증 과정에서,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모든 요청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마.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해당 상품의 원산지 여부에 대한 판정과 방문검증 결과를 가능한 한도 내에서 법적 근거 및 사실 확인을 포함하여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해당 상품의 특혜관세대우 자격에 관한 의견 또는 서류를 서면으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 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3항바호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된 의견 또는 정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원산지 여부에 관한 최종판정을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과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아. 실제 방문에서부터 제3항사호에 따른 최종판정까지의 방문검증 절차는 최대 6개월 이내에 수행된다.
- 자. 방문검증의 상세사항은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 간에 공동으로 미리 결정될 수 있다.

4.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상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사기혐의가 없는 경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행정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상품을 반출할 수 있다.

5.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 가. 수입자가 제1항가호에 따른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대하여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제2항나호에 따라 검증결과를 6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공된 검증결과 또는 방문검증 결과가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의 진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 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의 방문검증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 마.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제3항가호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의 방문검증 요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

6. 이 조에 따른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3.24조 비밀유지

1.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비밀유지의 모든 위반은 각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취급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 또는 정부의 명시적 허가 없이 공개되지 아니한다.

제3.25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 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관련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다. 원산지 증명서가 이 장의 요건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 라. 제3.23조제5항에 따른 경우

제3.26조 통과 또는 보관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이 장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인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그 상품이 제3.14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를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3.27조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 전략적 협력에 관한 약정」에 따라,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 장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이 협정의 이행 전에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3.28조 원산지규정소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제19.4조(위원회 및 그 밖의 기구)에서 정의된 관세위원회에 보고하는,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으로 구성되는 원산지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이 장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세당국은 10일 이내에 그러한 요청의 접수를 확인하고, 60일 이내에 그 요청에 회신한다. 이러한 목적상, 각 관세당국에 의하여 접촉선이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소위원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때에 회합한다.
4.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변경에 기초하여 부속서 3-가를 갱신하는 것
 - 나. 이 장의 효과적이고 통일되며, 일관된 운영을 보장하고 이에 관한 협력을 제고하는 것
 - 다. 세번변경,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 등과 같이 이 장 및 부속서 3-가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기술적 문제들을 다루는 것, 그리고
 - 라.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4년 후에 제3.4조와 제3.5조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하는 것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부 - 일반주해

1. 이 부속서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2에 기초하여 구성된다. 이 부속서의 품목명과 세계관세기구(WCO)가 설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법적 문안에 규정된 품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후자에 명시된 품목명이 우선한다.

2. 특정 소호(6단위)에 적용되는 하나 이상의 특정 기준은 그 소호 바로 옆에 기재된다.

3.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기준(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계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의 대상이 되는 경우, 선택기준 중 하나가 충족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결합기준(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계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의 대상이 되는 경우, 모든 기준이 충족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면,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는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도록 요구된다.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6.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 호 또는 소호의 차원에서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적시된 경우, 원산지 기준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제외된 특정 세번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당사국은 해석한다.

7. 이 부속서의 목적상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상품분류체계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상품분류체계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상품분류체계에서 처음 2단위를 말한다.

8. 이 부속서 5열의 목적상,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처음 2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처음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처음

6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완전생산기준이란 제3.4조의 의미 내에서 해당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X퍼센트 이상일 것이란 제3.5조에 따라 계산된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X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제2부 -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3-나
상품 목록

1. 각 당사국은 제3.3조를 이 부속서에 열거된 상품에 적용한다. 동 상품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6단위로 된 31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양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상품 목록을 매년 개정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230690, 321310, 321390, 340700, 350610, 391740, 391990, 392010, 392190, 392310, 392329, 392350, 392390, 392610, 392640, 392690, 401699, 420212, 420219, 420222, 420229, 420232, 420291, 420292, 420299, 420310, 420321, 420329, 430230, 430310, 441239, 482390*, 490300, 490900, 500400, 520839, 521039, 540110, 550932, 550961, 550969, 551519, 560311, 560410, 560741, 560750, 560811, 580421, 581092, 610130, 610230, 610310, 610331, 610342, 610343, 610433, 610442, 610452, 610453, 610461, 610462, 610463, 610469, 610510, 610520, 610610, 610620, 610711, 610712, 610722, 610791, 610811, 610819, 610821, 610822, 610831, 610832, 610891, 610892, 610910, 610990, 611011, 611020, 611030, 611120, 611130, 611211, 611212, 611521, 611594, 611595, 611596, 611599, 611710, 611790, 620111, 620112, 620113, 620191, 620192, 620193, 620211, 620212, 620213, 620219, 620291, 620292, 620293, 620311, 620312, 620319, 620331, 620332, 620333, 620339, 620341, 620342, 620343, 620349, 620412, 620413, 620419, 620431, 620432, 620433, 620439, 620441, 620442, 620443, 620444, 620449, 620451, 620452, 620453, 620459, 620461, 620462, 620463, 620469, 620520, 620530, 620590, 620620, 620630, 620640, 620690, 620711, 620719, 620791, 620799, 620811, 620822, 620891, 620892, 620899, 620920, 621040, 621111, 621112, 621132, 621133, 621139, 621142, 621143, 621210, 621220, 621290, 621320, 621430, 621440, 621600, 621790, 630130, 630140, 630231, 630391, 630492, 630493, 630532, 630533, 630539, 630612, 630710, 630790, 640291, 640299, 640340, 640359, 640391, 640399, 640419, 640610, 640620, 640690, 650500, 680530, 681280, 691200, 691490, 701400, 701590, 701919, 711311, 720720, 730890, 732290, 732393, 732599, 732690, 761699, 821300, 821520, 830140, 830890, 831000, 840390, 841231, 841330, 841391, 841480, 841490, 841510, 841590, 841899, 842091, 842121, 842123, 842131, 842139*, 842199, 842240, 843120, 843141, 844319, 844399*, 846694, 847330, 847989, 848079, 848490, 850110, 850300*, 850410, 850431, 850440, 850490, 850511, 850519, 850790, 851290, 851610*, 851631, 851632, 851660, 851690, 851770, 852910, 852990*, 853190 853340, 853400, 853590, 853620, 853669, 853690, 853890, 853931*, 853939*, 854140, 854232, 854370, 854390, 854430, 854442, 854470, 854720, 854890, 870829*, 870894*, 870899, 871410, 871680, 880400, 900190, 900211*, 900219, 900290, 901720, 902121, 903190, 910211, 911120, 911320, 940190*, 940330, 940490, 940510, 940540, 940560, 940592, 940599, 950300, 950510, 950669, 960810, 960820, 960910, 960990, 961511, 961900*

* 별표가 표시된 6단위 수준의 세번의 경우, 이 부속서는 이 협정에 따라 관세철폐의 대상이 되는 8단위 세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즉, 중국 관세양허표의 단계별 양허유형 “0, 5, 10, 15, 그리고 20”에 해당하는 세번을 말한다.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원본

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국가:		증명서 번호: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양식 발급국 _____ (뒤쪽 설명을 참조합니다)					
2.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국가:							
3.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국가:							
4. 운송 수단 및 경로(아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 출발일: 선박/항공/기차/차량 편명: 선적항: 하역항:		5. 비고:					
6. 물품의 연번 (최대 20)	7. 포장의 포장 및 번호	8. 포장의 수량 및 종류, 품명	9. HS 번호(6단위)	10. 원산지 기준	11. 총중량, 수량(수량단위) 또는 그 밖의 단위(리터, m ³ 등)	12. 송장 번호 및 일자	
13. 수출자 신고: 아래의 서명자는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이고, 모든 상품이 _____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_____ (수입국)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한다. (장소 및 일자, 권한 있는 서명권자의 서명)			14. 증명: 수행한 검사에 기초하여, 여기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이며, 기술된 상품이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증명한다. (장소 및 일자, 권한 있는 기관의 서명 및 관인)				

뒤쪽 설명

- 증명서 번호 : 권한 있는 기관이 부여한 원산지 증명서의 일련번호
- 제1란 : 한국 또는 중국에 있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 제2란 :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두 명 이상의 생산자가 만든 상품이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생산자를 기재한다. 수출자나 생산자가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가능”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이라고 기재한다.
- 제3란 : 한국 또는 중국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 제4란 : 운송수단 및 경로를 작성하고, 출발일, 운송수단의 편명, 선적항 및 하역항을 명시한다.
- 제5란 :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가 이란에 기재된다. 증명서의 발행이 소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진정등본일 경우 “(날짜)에 발행된 (번호)번 원본 원산지 증명서의 진정등본”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 제6란 : 물품의 연번을 기재하며, 물품의 연번은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 제7란 : 포장에 운송표장 및 숫자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한다. 운송표장이 문자나 숫자가 아닌 이미지나 기호인 경우, “이미지 또는 기호(I/S)”를 명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포장이나 숫자 없음(N/M)”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 제8란 : 포장의 수량 및 종류를 명시한다. 각 상품의 품명을 제공한다. 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품명 및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상품이 포장되지 아니한 경우, “포장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다.
- 제9란 : 제8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세번 6단위까지 기재한다.
- 제10란: 수출자는 제10란에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다음의 표에 기재된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원산지 기준	제10란에 기입
제3.4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서 규정되고 정의되거나 또는 그러하게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해당 상품이 그 원산지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WP
해당 상품이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세번변경요건, 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 공정요건 또는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PSR
해당 상품이 제3.3조(특정 상품의 취급)의 적용을 받는 경우	OP

- 제11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이 이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 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가 사용될 수 있다.

제12란: 송장 번호 및 날짜가 이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여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송장 원본의 번호 및 날짜가 이란에 명시된다.

제13란: 이란은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제14란: 이란은 권한 있는 기관의 권한 있는 인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며, 관인을 찍는다.

주 : 여기의 지침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뒤쪽에 기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 이 지침은 당사국의 공식언어로 인쇄되거나 기재될 수 있다.